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람	기관위원장

제821호 2011. 4. 28.(목)

차 례

훈 령

- 인천광역시서구 훈령 제284호 인천광역시서구청원경찰징계규정 전부개정규정 -- 1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487호 서구 공원내 축구장 유료화 시행 공고 ----- 3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488호 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 4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489호 토지수용 재결신청 열람공고 ----- 6

회
람

발행 : 인천광역시서구

편집 : 기획홍보실 [032-560-4140]

인천광역시서구청원경찰징계규정 전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전 년 성

2011년 4월 28일

인천광역시 서구 훈령 제284호

인천광역시서구청원경찰징계규정 전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서구청원경찰징계규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청원경찰 징계 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청원경찰법」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배치한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청원경찰법」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임용한 청원경찰로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징계의결기관) 청원경찰의 징계의결은 인천광역시 서구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에서 행한다.

제4조(징계의 종류) ① 징계의 종류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및 견책으로 구

분한다.

- ② 정직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보수의 3분의 2를 줄인다.
- ③ 감봉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하고, 보수의 3분의 1을 줄인다.

제5조(징계처분) 구청장은 청원경찰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의결에 따라 징계 처분한다.

1. 「청원경찰법」 및 관련 법령의 규정 또는 이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3.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4. 관할 경찰서장으로부터 징계요청을 받은 경우

제6조(준용규정)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청원경찰의 징계에 관하여는 일반직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전 징계사유가 발생한 사람에 대한 징계처분은 이 규정에 따른다.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 - 487호

서구 공원내 축구장 유료화 시행 공고

1. 대상공원 : 서곶근린공원 축구장 , 능내근린공원 축구장
2. 유료화 시행 : 2011.07.01부터 유료화 적용
3. 유료화 배경
 인조잔디 축구장 이용자가 해마다 늘어나 시설물이 빠르게 노후화됨에 따라 수익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유료화를 통하여 시설 유지관리비용으로 재투자하고자 하며 다수의 구민들이 축구장 이용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
4. 축구장 사용료 금액 (인천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조례 제15조 적용)
 - 체육경기 : 2시간(평일: 20,000원, 휴일: 30,000원)
 4시간(평일: 40,000원, 휴일: 60,000원)
 1일(평일:120,000원, 휴일:150,000원)
 - 기타행사 : 1일(평일:120,000원, 휴일:150,000원)
5. 축구장 사용시간 : 하절기 09시~18시
 동절기 09시~17시
6. 문의처: 서구청 녹지경관과 공원팀 [☎. 032)560-4800]

2011년 4월 25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 - 488호

재결신청에 따른 열람공고

사업시행자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 시행하는 도로사업【왕길동 소3-502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률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년 04 월 25 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1. 사업의 명칭 : 왕길동 소3-502호선 도로개설공사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가. 시행자의 명칭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 나. 시행자의 주소 :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244번지)
3. 사업인정의 근거 및 고시일
 -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3-502호선)실시계획인가 고시 제2010-5호(2010.01.21)
 - 인천도시계획시설(도로:소3-502호선)실시계획(변경)인가 고시 제2010-38호(2010.07.26)
4. 사업시행기간 : 2009. 09월 ~ 2011. 12월
5. 수용재결 신청 대상 토지 소유자 및 관계인 : "별첨"
6. 공고 및 열람기간 : 2011. 04. 26. ~ 2011. 05. 11.(15일간)
7. 열람 장소 및 의견서 제출처 : 인천광역시 서구청 건설과(032-560-4485)
8. 공고내용
 - 가.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 시행하는 【왕길동 소3-502호선 도로개설공사】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수용을 위한 수용재결 신청에 대하여 인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 신청되었음을 알려드리며,
 - 나.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등은 열람 공고 사항에 대한 의견이 있을 시에는 공고 게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업시행자 제시액 조서(토지)

【사업명 : 왕길동 소3-502호선 도로개설공사】

(단위:㎡,원)

연번	소재지		지목	면적(㎡)	편입면적	사업시행자 제시액(원)		소유자		관계인		
	동	지번				단가	금액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내용
	계						441,738,000					
1	왕길동	196-17	장	277	277	1,138,500	315,364,500	정숙	서울 송파구 송파동 166 가락맨션 210-201	(주)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검단지점)	근저당권
2		196-21	장	15	15	1,138,500	17,077,500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검단지점)	근저당권
3		196-22	장	31	31	1,138,500	35,293,500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검단지점)	근저당권
4		196-23	장	3	3	1,138,500	3,415,500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검단지점)	근저당권
5		196-26	장	62	62	1,138,500	70,587,000			(주)하나은행 중소기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1가 101-1 서울 중구 을지로2가 50 (검단지점)	근저당권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2011 - 489호

토지수용 재결신청 열람공고

인천광역시서구청장이 도시계획사업으로 시행하는 「원신근린공원 2단계 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재결의 신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신청한 내용을,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1조(열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재결신청서의 열람 등)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은 열람하시고 공고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에 서면으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 4. 27.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원신근린공원 2단계 조성사업
2. 사업시행자 성 명 :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3. 사 업 시 행 지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산61번지 일원
4. 사 업 개 요 : 원신근린공원 2단계 14,383㎡
5. 열 략 기 간 : 2011. 4. 27. ~ 2011. 5. 11.
6. 열 략 장 소 : 인천광역시 서구청 녹지경관과 (☎ 032-560-4805)
7. 의견서 제출처 : 인천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 인천광역시 서구청 녹지경관과
8. 대 상 물 건 조 서 : “붙임” 참조(원본 서구청 녹지경관과 보관)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구청 녹지경관과(☎032-560-480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